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 의무 규정 신설 등〉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156호)

202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 관련 개정 규정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범계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1.
3. 회부연월일 : 2023.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나 갈등을 우려하여 교원 보호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신고 규정이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의 분리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
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
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u> ① <u>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학교 등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④ <u>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u>

현행	개정안
<신설>	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응급조치의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2.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분리

최근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침해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실질적인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다양한 방식의 교권 보호 대책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와 신고인 신분보장, 불이익 금지, 응급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¹⁾되었는바(2023.9.21.), 개정안의 취지가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참고. 관련 개정 규정)

문 의 처
02) 6788-5193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2024.3.28. 시행]

※참고 : 관련 개정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